

【별첨1】

**직무 기술서: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**

○ 직무 개요

<b>직무분류</b>	-	<b>소속 부서</b>	진료심사평가위원회
<b>직무명</b>	상근심사위원	<b>소속 부</b>	진료심사평가위원회

○ 직무 목적

<b>목적</b>	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6조에 의한 법정위원회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의약 분야 전문가를 확보, 전문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및 적정성을 평가하고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우리원 심사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·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
-----------	---

○ 핵심과업별 책임 및 역할

핵심과업	책임 및 역할
요양급여비용 심사, 심사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	·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평가, 급여기준심사지침 등 제·개정사항 발굴, 임상 현장과의 적정진료 연계 시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
	· 관련부서의 질의가 있는 경우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
	· 의약계와의 협력 및 교류에 있어서 심사평가원 직원으로서의 업무 수행

○ 세부과업

연번	과업
1	·전문분야별 심사의뢰건 직접 심사 및 자문(소송, 분석기반 심사, 이의신청·심판청구·의료급여·민원, 신포괄수가 등 포함)
2	·심사기준 제·개정사항 발굴
3	·행위·약제·치료재료 관련 정책지원 (각종 위원회 참여)
4	·해당 분야 직원대상 전문의학 교육
5	·요양급여 적정성 평가, 평가 모니터링, 평가수행기준 개선 과제 수행 등
6	·의약계 등 업무 관련 대내외 소통

○ 직무요건

구분	상세 내용	
일반요건	요구 경력	의과·약학대학·의료기관·약국 또는 건강보험·보건의약 관련분야 등 경력 10년 이상
	필수 자격	의사·치과·한의사·약사 등
교육요건	요구 학력	의사·치과·한의사·약사 및 전임강사 이상 경력자의 한하여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 필수
	요구 전공	의료법 제77조,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2항에 따른 진료과목 등
필요지식	건강보험에 관한 이해, 심사 관련 지식, 관련 법령 이해(국민건강보험법, 의료법, 약사법 등), 의료 임상 지식, 급여기준 관련 지식, 보건의료선협 사례·국내외 보건의료 동향·의학전문용어, 약학 전공지식, 의학적 전공지식 등	
필요기술	임상 실무 경험 및 관련 노하우, 약제 관련 실무 경험 및 관련 노하우, 제도 운영의 다면적 효과분석 및 평가 능력, 제도 개선점 발굴 및 개선안 마련 능력, 보고서 작성 능력 등	
직무수행태도	정보분석 및 검증에 대한 정확성·전문성,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적극적 업무 수행력, 국제교류 시 기관차원 업무수행자로서의 자세, 철저한 정보보안 및 외부유출 금지 의지, 업무수행의 투명성·공정성·청렴성 등	
추천 교육	전문분야 학회 또는 포럼 참석 등	